보도자료

발 신	사단법인 두루	담 당 자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 시민모임 마중 심아정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배 포 일	2021. 11. 1. (수)	연 락 처	이한재(02-6200-1679) 심아정(010-7935-6603) 김지림(02-3675-7740)	총 19장

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입장

1.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하였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2. 그러나 법무부의 진상조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의문을 남겼다. ‘진상조사 결과’의 이름을 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그 대리인단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3. 진상조사라면 최소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정작 그러한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막연히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답변은 언제 어떤 일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모두에게 의문만을 남긴다.
4. 규정에 없는 장비를 사용하고, 사람을 고문한 뒤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은 공허하다.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하였다면 최소한 당사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또한 법무부는 금번 고문사건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자의 과거 영상 및 행적 등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러한 스스로의 2차가해에 대한 반성과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인권침해를 당하는 소수자들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게 될 것이다.

*** 모든 보도에 당사자 이름, 나이, 얼굴, 병명, 난민신청사유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민법 제17조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당사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 사진을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인권침해 인정 환영,
그러나 조사 과정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해제를 촉구한다.

1.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고문 등 일련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적정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법무부가 처음으로 인권침해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진상조사 경과 및 결과 관련]

2. 그러나 법무부의 내부 조사 과정은 의구심을 남겼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대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변호사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철저히 피해자를 배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피해당사자나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일련의 인권침해 사실(구체적인 피해 유형 및 일시 장소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하는 절차 역시 부재했다.

피해자의 대리인들마저도 사건 조사가 종결되는 단계였던 지난 10. 26. 에서야 처음으로 조사 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으며, 여타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조사 개시 당시 짧은 면담이 있었고, 결과 발표 직전에 대리인단의 요청에 의해 피해당사자의 증언을 들었으나 이것이 실제 조사결과에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3. 특히 오늘 발표에는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새우꺾기' 고문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을 밝히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러한 인권침해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있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를 충분한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법무부 내부 진상조사단은 조사 종결 하루 전인 10월 28일에야 지금껏 총 5회의 새우꺾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새우꺾기' 징벌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는 방식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관련 가해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이것을 과연 충분한 조사와 적절한 절차 진행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4. 법무부는 '특별계호 통고서가 허위공문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건 초기부터 고문 외에도 독방 구금의 남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왔다. 피해자에 대하여 십수 차례 이루어진 특별계호의 사정에 대해서는, 일시와 장소가 잘못 기재되고 담당자 서명조차 없는 특별계호통고서 외에는 남아있는 증거가 없어 각각의

특별계호의 정당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미 문서만으로도 절차적인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법무부는 그러한 문서에 대한 아무런 경위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절차적, 실체적 의문이 남아있는 특별계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는 매우 유감스럽다.

5. 법무부가 스스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당사자에 대한 보호해제이다.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를 즉각 해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출국을 권유하거나 다른 외국인보호시설로의 이감을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왔다. 정작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무부의 금번 조사결과 발표는 진정성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및 후속 조치, 외국인 보호제도 구조적 개선을 위한 계획 관련]

6. 금번 피해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보호외국인의 기본적인 요구가 보호소 내에서 수용되지 않았던 데에 있다. 특히 피해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현재도 보호외국인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보호외국인의 의료접근권 박탈에 대한 조사,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조사를 마무리지어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7. 보호 개시 및 연장의 적부를 제3의 기관이 판단케 하는 등의 입법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점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에 대한 연장 심사는 지난 십여년 간 거부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3기관에 심사를 맡기는 것은 면피성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의 보호소 내 사망사건 이후 유사한 대책을 비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본 건의 피해당사자와 같이 난민신청 등을 이유로 필연적으로 장기구금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외국인을 무리하게 구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8.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법무부가 금번 고문사건 문제제기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없는 피해자의 과거 영상 및 행적 등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서 인정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법무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인식과 재발방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소수자들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게 될 것이다.

2021년 11월 1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참고자료 - 2021. 9. 29. 자 기자회견문>

1. 화성 외국인 보호소 인권유린 사건의 개요

(1)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소 구금

피해자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피해자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2017. 10. 에 입국하여 같은 해 12. 에 난민신청을 하고 이후에는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난민신청자로서 체류자격 연장을 놓치는 등의 사유로 2021. 3. 4.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즉시 보호되었습니다.

(2)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에 의한 탈법적 독방 운영

외국인보호소는 '특별계호'라는 이름으로 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에 대한 '징벌방'이 아닙니다. 「외국인보호규칙」제40조(격리 보호)에 따르면 특별계호는 보호시설 및 구성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위 그러한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피보호자를 일시적으로 독방으로 분리하는 **특별계호가 징벌의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 병원 진료 요구 등에 관해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 및 법무부장관에 여러 차례 요구를 전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별계호'라는 명목 하에 첫 3개월간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1/3 가량을 독방에 구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독방 구금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반복적, 연속적 특별계호처분으로 법규상 **특별계호 기간의 제한을 사실상의 일탈을 지속하다, 심지어 법규상의 명백한 연장 제한을 위반하고 11일간 독방에 구금하기도 하였습니다.**

(3) '새우꺾기'고문 자행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화성 외국인보호소

는 일명 ‘새우꺾기’ 방식의 가혹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새우꺾기’란 수갑을 사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을 사용해 발목을 포박한 뒤 배를 바닥에 댄 채로 등 뒤로 손목포박과 발목포박을 연결하여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 꺾게 하는 자세로서 일종의 고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소는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박스테이프, 케이블 타이 등 불법적인 도구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머리보호장비를 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우꺾기 고문은 최소 20분에서 최대 세 시간 이상 연속으로 가해졌으며, 하루에만 4시간 24분동안 새우꺾기 고문이 행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을 살펴보면, 포승줄, 수갑, 머리보호장비 등은 **자해 등을 막기 위한 용도로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장비를 이용해 사지를 결박하고 몸을 등 뒤로 꺾은 뒤 피가 통하지 않는 자세로 머리보호장비까지 씌워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애초에 사용의 목적을 넘어선 ‘고문’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4) 공문서 조작

법령상 특별계호 처분을 하려면 보호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 진술 기회 보장과 함께 관련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그러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설명을 요구하자 **처분 후 수주가 지난 뒤에 공문서를 급조하여 교부**했습니다.

이 통고서는 외형상 **1) 기간이 다른 12개의 문서가 모두 특정 두 날짜에 작성**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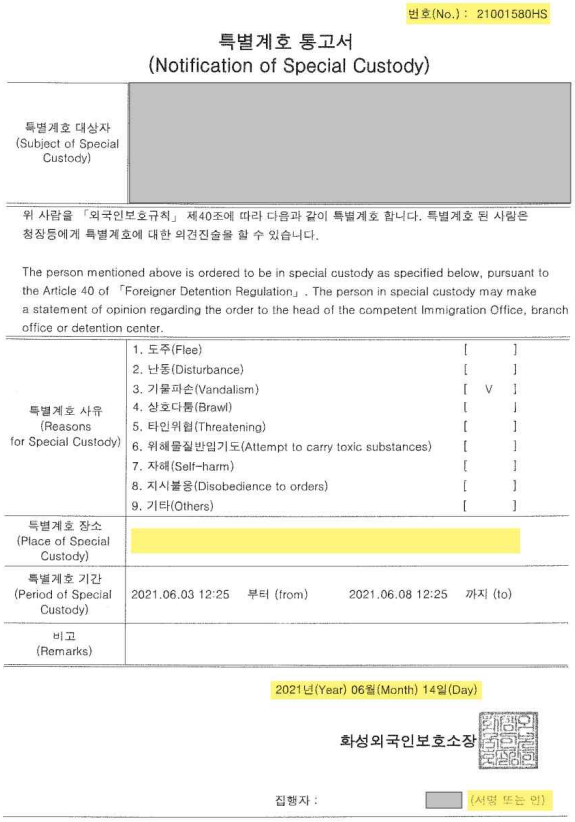

번호(No.) : 21001580HS

특별계호 통고서
(Notification of Special Custody)

특별계호 대상자 (Subject of Special Custody)	

위 사람을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계호 합니다. 특별계호 된 사람은 청장등에게 특별계호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The person mentioned above is ordered to be in special custody as specified below, pursuant to the Article 40 of 「Foreigner Detention Regulation」. The person in special custody may make a statement of opinion regarding the order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branch office or detention center.

특별계호 사유 (Reasons for Special Custody)	1. 도주(Flee)	[ ]
	2. 난동(Disturbance)	[ ]
	3. 기물파손(Vandalism)	[V]
	4. 상호다툼(Brawl)	[ ]
	5. 타인위협(Threatening)	[ ]
	6. 위해물질반입기도(Attempt to carry toxic substances)	[ ]
	7. 자해(Self-harm)	[ ]
	8. 지시불응(Disobedience to orders)	[ ]
	9. 기타(Others)	[ ]
특별계호 장소 (Place of Special Custody)		
특별계호 기간 (Period of Special Custody)	2021.06.03 12:25 부터 (from) 2021.06.08 12:25 까지 (to)	
비고 (Remarks)		

2021년(Year) 06월(Month) 14일(Day)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집행자 :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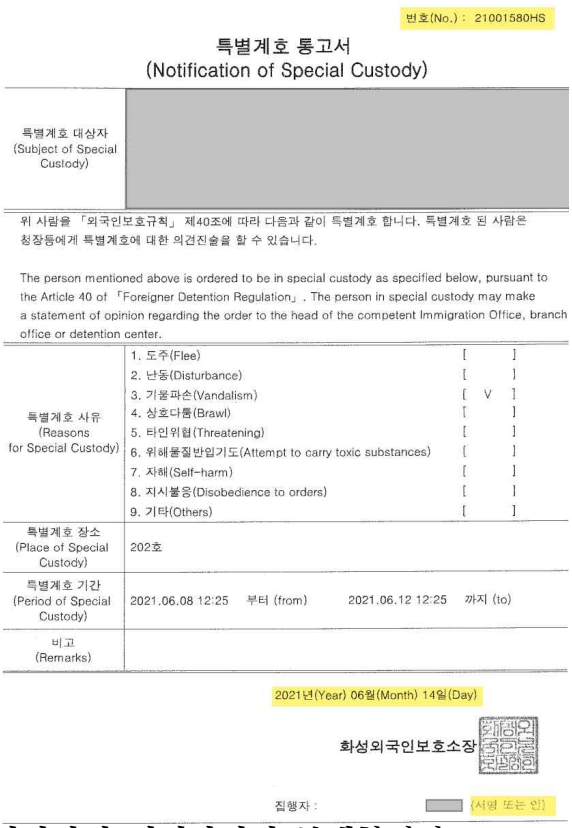

번호(No.) : 21001580HS

특별계호 통고서
(Notification of Special Custody)

특별계호 대상자 (Subject of Special Custody)	

위 사람을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계호 합니다. 특별계호 된 사람은 청장등에게 특별계호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The person mentioned above is ordered to be in special custody as specified below, pursuant to the Article 40 of 「Foreigner Detention Regulation」. The person in special custody may make a statement of opinion regarding the order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branch office or detention center.

특별계호 사유 (Reasons for Special Custody)	1. 도주(Flee)	[ ]
	2. 난동(Disturbance)	[ ]
	3. 기물파손(Vandalism)	[V]
	4. 상호다툼(Brawl)	[ ]
	5. 타인위협(Threatening)	[ ]
	6. 위해물질반입기도(Attempt to carry toxic substances)	[ ]
	7. 자해(Self-harm)	[ ]
	8. 지시불응(Disobedience to orders)	[ ]
	9. 기타(Others)	[ ]
특별계호 장소 (Place of Special Custody)	202호	
특별계호 기간 (Period of Special Custody)	2021.06.08 12:25 부터 (from) 2021.06.12 12:25 까지 (to)	
비고 (Remarks)		

2021년(Year) 06월(Month) 14일(Day)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집행자 : (서명 또는 인)

고, **2) 12개의 문서번호가 모두 동일**하며 **3) 담당자의 서명날인이 부재**합니다.

그 내용상으로도 1) **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2) 핵심적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3) 특정 일자에 중복해서 발급되기도 하고**, 4) **심지어는 기재된 시간과 장소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통고서에 기재된 일시 장소 자체가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심각한 절차위반이자 공무원의 비위행위입니다.

2021. 6. 10. 08:00 ~ 24:00 기간동안 특별계호통고서상 일시 CCTV 캡쳐
위 기간의 CCTV 전체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방은 계속해서 비어 있음. 두 개의 통고서가 이 기간 중에 중복해서(6. 8. ~ 6. 12. 및 6. 9. ~ 6. 13.) 발급되었으나, 두 통고서 모두의 일시 및 장소가 허위인 것으로 보임.

2. 피해자 발언

치통이 심해서 발치를 위해 외부진료를 요청했지만 보호소 직원이 이를 거절했고, 나를 독방으로 데려가 특별계호라며 감금했다. 나는 이날 독방에서 하루 종일 극식함 치통에 시달렸다. 그들은 내가 두 병의 샴푸를 마시지 전까지 나를 방치했다. CCTV를 통해 사태를 파악한 그들이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제서야 발치를 할 수 있었다. 돌아와서 다시 독방에 갇혀서 닷새를 지냈다.

내가 아플 때마다 그들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 주지 않았고, 그때마다 나는 난동을 부렸다. 지난 4월에도 약이 끊어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보호소는 나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그때는 비누를 먹었다.

한 시간 동안 전화로 물을 달라고 호소했다. 직원들은 CCTV로 나를 보고 있었을 텐데 아무도 와주지 않았다. 독방 안에서 (뭔가를) 부쉈다. 그날 밤 자정 지나 밤새도록 문자 그대로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다. 나는 두들겨 맞았

고, 극단적인 폭력을 당했다. 나는 수갑이 채워지고 밧줄로 묶였다. 바닥에 배를 대도록 나를 눕힌 상태였다.

그들은 나를 동물처럼 취급했다. CCTV에 다 있다. 당신들도 볼 것이다. 3월부터 내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하나도 잊지 않았다. 모든 상세한 일들까지 다 기억난다.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것 같다.

그들은 숨기고 싶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나의 건강에 대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나는 네 달 동안 외부의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 나는 매달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보호소는 나의 질병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다. 그들은 나의 건강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나를 무자비하게 때렸다. 여기 보호소에서 겪은 폭력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나는 보호소 기물을 때려 부쉈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 화성보호소에 나를 때리고 고문했던 사람의 얼굴과 모든 것을 기억한다. 폭력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이곳을 화성 관타나모라고 불러야 한다.

하루하루, 매 시간, 매 분, 매 순간 이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 우리는 한 방에, 그것도 철장 안에 갇혀서 24시간 내내 갇혀있다. 나는 이곳에 온지 이제 7개월이 되었고 그동안 많은 친구들이 생겼다. 감옥에서 온 친구들도 있다. 그들은 모두 임을 모아 감옥이 백 배 낫다고 한다. 이곳에서 우리는 동물원의 동물처럼 케이지에 갇혀서 24시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갇혀 있다. 외출도 운동도 없이.

3.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실태

(1) 2021년 상반기 외국인보호소 현황(법무부 정보공개자료 분석/마중)

1) 보호외국인 숫자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시민모임 마중에서 법무부에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내에 수용 중인 보호외국인 숫자는 2021년 1월 963명, 2월 1,013명, 3월 1,045명, 4월 996명, 5월 994명, 6월 1,076명으로 밝혀졌다.(6월31일 공개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인원은 280명).

2) 보호기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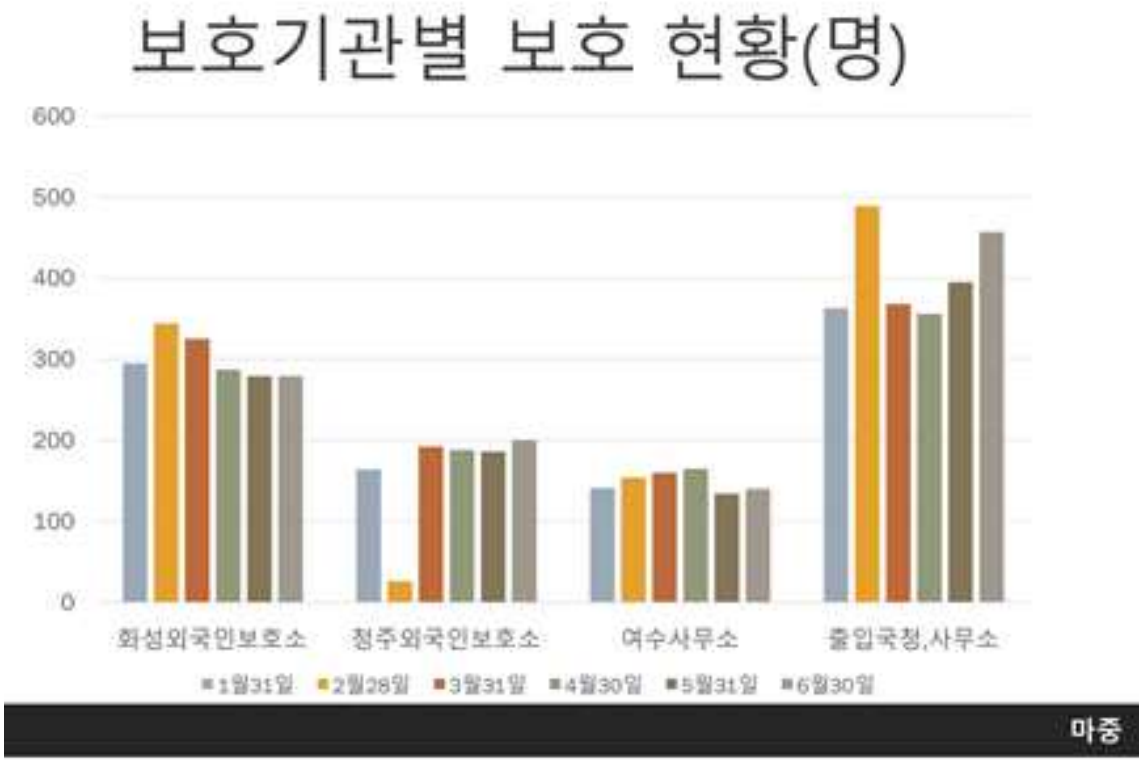

3) 보호기간별 현황(2021년 6월 30일 현재)
1년 이상(12명), 6개월~1년(28명), 3~6개월(58명), 1~3개월(232명), 1개월 미만(289명)

4) 보호사유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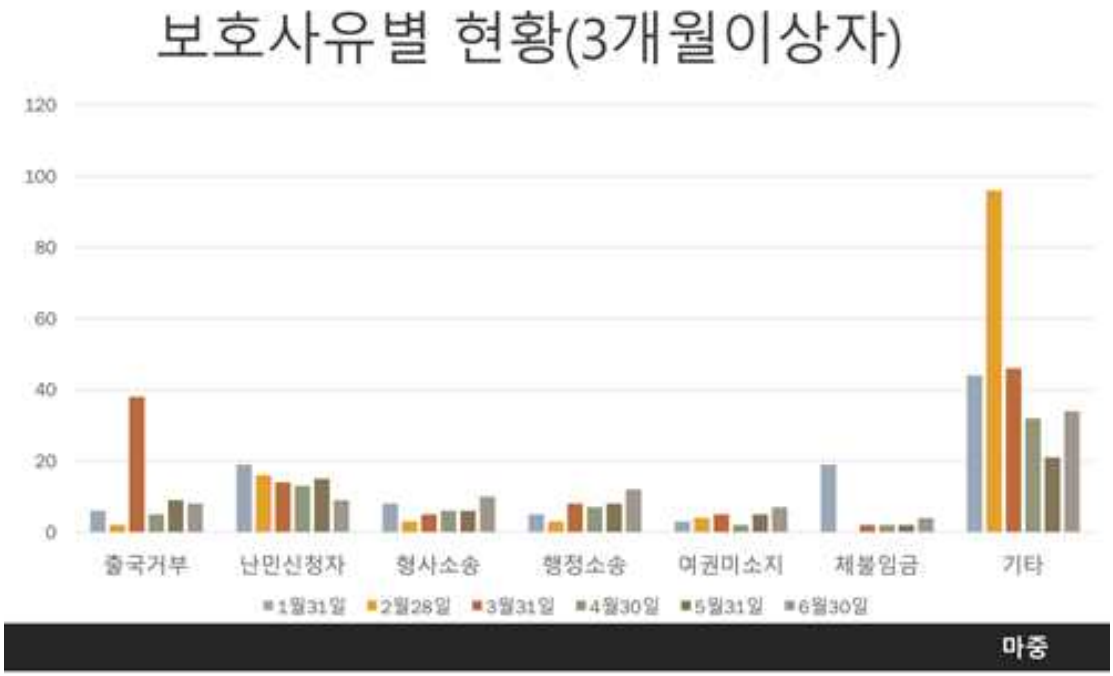

(2) 무기한 구금의 문제

'보호'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체류기간이 지난 미등록 이주민입니다. 여러 이유로 비자연장 기한이나 난민신청 기간을 놓친 이들입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귀국을 미루었거나 난민신청 중인 이들도 있습니다. 강제퇴거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 즉 귀국을 준비하는 단기구금자와 난민신청 중인 장기구금자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사실상 무기한 구금에 가깝습니다. 현재 보호기간의 연장은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에 허가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법원의 심사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조항입니다. 난민신청 중인 이들은 귀국할 수 없기 때문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문구 자체가 문제적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세 번이나 위헌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위헌의견(5인)이 합헌의견(4인)보다 다수였지만, 위헌정족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위헌 결정에는 6명 이상 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필요).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6921호, 일부개정 2020. 2. 4., 시행 2020.8. 5.) 제63조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4년 8개월 동안 최장기구금을 당한 O씨는 난민 재판에 호송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했고, 네 번의 패소를 겪는 동안 법원에 출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호소 측이 "호송가능 인원이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재판호송 거부로 O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에야 그의 보호는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3) 보호소의 열악한 의료시스템

현재 한 명의 의사가 최소 백여 명에서 많게는 3~4백 명 이상의 보호외국인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의료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간과 주말에는 당직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비의료인이 환자상태를 판단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보호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과 관련된 내과 전공의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의료기기의 미비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단한 질병도 외부병원에 나가지 않으면 검사할 수 없고, 외부병원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보호외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은 보호소에서 치료가 어렵습니다.

실내에 갇혀 지내는 생활, 열악한 식사, 부족한 운동 탓에 장기구금자 대부분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달고 삽니다. 소화불량은 기본이고, 20대 청년에게도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기며, 치아가 빠지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외국인들은 코로나 사태로 야외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햇볕을 쪼이지 못해 피부염과 두피염이 생깁니다. 그밖에도 불면증,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호소 내부 진료소는 장기구금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진료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없으니 정신과 치료와 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고,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1년간 장기구금 중이던 이란 출신 남성이 사망하였는데, 그는 사망 한 달 전부터 음식을 전혀 삼키지 못했고 하체에 심한 부종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건강이상 증세를 호소했지만, 보호소 당국은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HIV 감염인 M씨가 격리된 공간에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한 채 7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습니다. 완전 격리로 창문을 열 수도, 밖에 나가 누군가와 대화할 수도 없고, 운동 시간에도 혼자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M은 단 한 번도 운동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격리 방식도 문제지만, HIV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대책 없는 무기한 구금이라는 점에서도 이 사례는 매우 문제적입니다.

(4) 박탈당한 통신의 자유

현재 보호외국인들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은 보호실 내부에 설치된 공중전화와 인터넷실에 설치된 PC 뿐입니다. 인터넷실 사용도 사용횟수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제한되어 왔는데,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통신이 허용된다면 보호외국인들이 느끼는 고립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는 보호복 착용

현재 보호외국인들은 '보호복'이라고 불리는, 마치 교정시설의 수의복과 같은 옷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소 당국의 운영에는 편리할 수 있으나 보호외국인의 인격과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면회 때 '보호복'을 입고 있는 모습에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외부 병원진료나 법원 출석 등을 할 때도 '보호복'을 입은 채 수갑을 차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복'은 일주일에 한 벌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세탁이 필요한 경우, 여벌의 옷이 없으므로 속옷 차림으로 빨래를 하거나 마를 때까지 그 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보호외국인에게 형사범을 연상시키는 '보호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6) 보호소 내부에서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동권

2000년 11월에 개소한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수용거실'이라 불리는 방마다 쇠창살이 있고, 방과 방 사이의 이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여러 명이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내내 삼시세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합니다.

코로나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운동이 주 1~2회로 한정되어 폐색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호소 내부에서조차 이동을 제한하며 수용거실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보호외국인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일과시간 동안만이라도 수용거실의 철창을 개방하고, 보호소 내 의무실, 인터넷실, 도서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이중철장과 아크릴로 가로막힌 면회실

보호외국인을 면회 온 이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은 이중 철창과 아크릴로 가로막힌 면회실 구조입니다. 대화조차 수화기를 통해 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한 사람만 면회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운영 구조는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더 불편합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보호소의 면회실을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보호일시해제'라는 제도 자체의 모순

'보호일시해제'는 '안'에 있는 외국인들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금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아파도 그냥 내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3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내야하고, 나가서 지낼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신원보증인으로 세운 후 해당 출입국에서 '기준을 알 수 없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호일시해제를 허가받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출입국에 찾아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3개월마다 해제기간을 연장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노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을 못하게 하는데 생활은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9)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사건의 재발

2019년에도 특별계호실(징벌방, 독방)에 격리보호조치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이 이집트인 A에게 수갑, 머리보호대, 발목수갑을 채웠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를 조력하던 난민인권센터는 외국인보

호소 공무원들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폭행과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A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계구 사용 및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법무부장관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 정책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사건 19진정0360200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이번 새우꺾기 고문사건은 1년 전의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재발한 사건일 뿐 아니라, 그 수법이 더욱 잔혹한 양상을 띱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호'시설이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의 표현처럼,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화성 관타나모'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 발언

5. 출입국행정과 구금의 현실

"뒤로 묶은 것,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눈뜨고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이번 이주구금시설 가혹행위에 관한 인권활동가들의 발언이 아닙니다. "자해하는 외국인을 구해낸 것", "최소한의 조치, 그 목적은 온전히 이분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라고 어제 주장했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본부')의 한 간부가 며칠 전에 인권활동가에게 한 말입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외국인 뉴스만 나오면 반대. 반대댓글 무섭다. 위험수위 넘나든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접했던 출입국본부 간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될 것이라는 취지에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외국인혐오에 기대 맞불을 놓겠다는 경

고이자 협박이었습니다. 어제 일부 간부들의 부적절한 대응은 그 경고, 협박 실행의 일부였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혐오에 의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역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며 “인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14년 전 구금되어 있던 이주민들이 도망칠까봐 불이 났음에도 보호소 관리자들이 잠금 장치를 열어주지 않아 이주민 10명이 죽고 17명이 중상을 입었던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를 기억합니다. 안전을 위해,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혹행위를 했다는 변명 속에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의 잔인하고 비겁했던 가해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주민이 죽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야 이들을 사람으로, 권리의 주체로 볼 것인가. 정부가 그러면 안 됩니다.

2004년부터 국가인권위 등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전국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자행되었던 온갖 공권력 행사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법원에 의해 확인된 적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안에서 죽어도 “비디오가 녹화가 안 됐다”, 가혹행위를 당해도 “거짓주장이다” 등등의 일방적인 변명을 들으며 너무도 죄스럽고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주민을 괴물로 만들고 외국인혐오를 극대화시켜 어줍잖은 물타기를 하려는 이들이 보입니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그동안의 문제를 드러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장 피해 이주민 당사자에 대해 정신심리치료, 일시보호해제를 실시하고, 이 사건과 관련 관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제도적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국인혐오에 기초해 이주민 인권을 침해하거나 외국인혐오에 기초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6. 기자회견문

‘새우꺾기’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등
-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1.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우여곡절 끝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갇힌 M씨는 ‘특별계호’라는 명목 하에 3개월간 12차례, 전체 수용기간의 1/3 가량을 독방에 구금되었다.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는 M씨에 대하여 보호소는 손발을 등 뒤로 연결하여 사지를 새우 등처럼 꺾은 채 최대 4시간 이상 방치하는 방식의 가혹행위로 대응하였다.

2.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독방 특별계호의 기간의 제한과 절차적 제한을 모두 위반하고, 박스테이프와 케이블타이라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도구까지 임의적으로 동원하여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인위적인 자세를 만들어 장시간 방치하여 M씨를 사실상 고문하였다.

3. 사진을 보라. 팔다리가 모두 묶인 채, 머리는 박스테이프로 칭칭 감겨 2.6평의 독방에 네 시간동안 방치된 한 사람의 사진을 보라. 인위적으로 몸을 꺾어 피가 통하지 않는 자세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사람의 몸짓을 보라. 이 사진만을 보라.

3. 법무부와 화성외국인보호소는 M씨의 평소 언행을 들어 ‘자해를 막기 위해’, ‘난동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 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런 취급을 받을 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소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조차,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이런 고문을 이토록 상습적으로 가하지 못한다.

4. 외국인보호소는 사실상 교도소와 다름없이 감시와 제재 속에 운영되고 있으나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로서 ‘보호소’라는 가면을 쓰고 운영되어

왔다. 이번 인권유린 역시 '자해를 막기 위한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정당화되었다. 일반 교도소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교도소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반인권적 행위들이 '법의 공백' 하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5. 이제 이러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되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문의 피해자인 M씨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라.

둘째. M씨에 대해 이루어진 일련의 인권유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을 약속하라.

셋째. 화성외국인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은 본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외국인 보호소의 무기한 구금 문제, 열악한 보호 실태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연대단체 일동

(사)개척자들,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청년오픈플랫폼 와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재)제중의료복지재단노동조합, 416 파주시민합창단, 70민노 Collective Ping, House Of Dawn 새벽의 집, International Waters 31, KIN(지구촌동포연대), Vladimir Tikhonov, 가디언즈 오브 클라이밋, 가치교육연구-숨, 가치이은집, 강동마을네트워크,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건설노조, 경기녹색당, 경기대학교 인권모임 경기문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고양상담소, 고양시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공정미디어연구소, 관악동작녹색당,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법X위안부 세미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후악동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까페여름,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재판 응원단, 노동당,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 노동당 동대문당협,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서울시

당 강남서초당협,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구당원협의회,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당협,노동당 서울특별시당,노동당 인천시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자투쟁,노동정치사람,노들장애인야학,노사모 ,노한누리,녹색당,녹색전환청년그룹,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문화도서관 지구별길동무,다산,달팽이학교 ,대안문화연대 ,대안연구공동체 ,대안연구공동체 <현대와 사상팀> ,대전녹색당 ,두레방 ,두레방쉼터 ,두번째테제 ,모두우리네트워크 ,미리암 이주여성 센터 ,미우세 ,민들레학교 ,민우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바닥공동체 ,변방의 북소리 ,복면증언 ,부산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부천시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평그룹 시각 ,빈민해방실천연대 (전철연, 민주노련)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사단법인희망씨 ,사람과공감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전자서비스 해복투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성교육교사회 ,성교육연구회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소박한 자유인 ,소박한 자유인 책읽기 모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수요평화모임 ,수원 시민 ,수원이주민센터 ,수유너머,수유너머104 ,시설청소년인권연구소 ,아나키스트그룹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아우름 강동장애인부모회 ,아침꽃, ,아트라운지 쌀 ,안프로하우스 ,양심과 인권-나무 ,언니들의병원놀이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여럿이함께하는동네야놀자 ,여성환경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연대하는 교사 잡것들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수용소> 연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걸음 ,예술행동 한뼘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지랖협동조합 ,완벽한날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우리지회 ,우리편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월장석친구들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음성민중연대
이스크라21 ,이주민방송 MWTV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이주민영화제 MWFF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화여대민주동우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민의 적(赤) ,인우회 ,인천페미액션 ,읽기의 집 ,작은따옴표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학노동조합 협성대지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녹색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시민모임 봄 ,지배자도 없고 국경도 없다 ,직접행동DxE ,직접행동DxE 동물행동 소모임 ,진보 3.0 ,진보당 부산시당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

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담론 ,청년플랫폼 위드위드 ,청소년창의문화터 미루 ,청주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충남녹색당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케이오 ,탐정들의 밤 ,통일의병 ,파주여성민우회 ,페데리치 번역모임 <마감마녀> ,평등교육실현을 전국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평화의 문화 ,한국활동가 모임 ,평화의문 만들기 네트워크 ,평화의문화한국네트워크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 연구소 ,피스모모, ,피플퍼스트성북센터 ,한국디베이트협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베평화재단 ,한삶의 집 ,함께하는세상 ,함께했나 ,해방세상 ,해봄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해봄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협동조합달팽이학교 ,형명재단 ,호박이넝쿨책-야책 ,홈리스행동 ,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활동마중, ,화우공익재단 ,희망의 학교

[개인]
강성민 강정숙 고길천 고아라 고영주 고윤정(파주민우회원) 고주영 곽영신 구숙경 구현정 권영실 김경애 김권호 김기진 김다혜 김대석 김동규
김명희 김미정 김미혜 김민수 김민철 김민형 김민환 김범용 김병수 김보성 김선재 김수동 김수연 김수징 김승우 김신애 김아영 김양우 김엘림 김연순 김예원 김예은 김예진 김용진 김유진 김은영 김은희 김의진 김정만 김지선 김지예 김창섭 김태완 김현미(이주여성인권포럼) 김현빈 김현주 김현주 김혜련 김화용 나희덕 남인우(극단 북새통) 남헌영 노고운 류기환 류재형 문지혜 민아영 박누리 박동주 박두환 박명숙 박상욱 박선준 박성우 박성호 박성훈 박세하 박숙영 박영옥 박은영(연세대학교) 박정재 박준(문화노동자)
박진수 박진우 박혜영 박희수 방승호 백진우 변정윤 서유라 서진숙 서진희 선우두빈 성경모 소재두 손건웅 손범준 손병옥 솔봉이 송건섭 송다방 신영란 신정현 안근철 안명자 안성균 안혜경
에밀이우다 오가인 오두영 오민석 오세종 오세향 오영주 오태연 용수빈 우도성 우성구 유수경
유영숙 유옥순 유은미 유은빈 유재호 유희 윤미화 윤엘리스 이계수 이광남 이광희 이낙천 이대훈(성공회대) 이란희 이민동 이민진 이상현 이수희 이안소영 이예슬(대전녹색당) 이용수 이원 이은희 이정은 이주연 이찬욱 이혜인 이혜정 이효성 임종린 임현덕 임현석 장동성 장미현(역사문제연구소) 장윤미 장윤영 장지영 전한울 정명자 정수린 정연훈 정용택 정인숙 정정훈 정종배 조기숙 조민기 조연주 조은제 조일준 조태진 조혜선 주정희 주현성 진나래 진형익 차원 채효정 천여공 최성욱 최수정 최승연 최정은 최종철 최지영 최진규 최춘식 최호연 하민지(비마이너 기자) 하연화 한공기 허혜윤 현남숙 혜린 홍석준 홍세희 황선애 황현진 황혜준